

한국 은행

92. 1.

고 발 장

고 발 인 이 승 회

권 진 관

이 동 출

박 현 용

황 정 아

피 고 발 인 김 용 진

이 수 휴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이 승 회(대표 고발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 8364

2. 권 진 관

주소 : 서울 구로구 옥수동

3. 이 동 출

주소 :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전화번호 :

4. 박 현 용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전화번호 :

5. 황 정 아(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전화번호 :

(이상 연락처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연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 8364 전송 : 793 4745

피고발인

1. 김용진 (전 은행감독원장)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화번호 :

2.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전화번호 :

고발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속의 시민들이고, 피고발인 김용진은 95년 1월부터 96년 8월까지, 피고발인 이수휴는 96년 8월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직에 있던 자들입니다. 고발인들은 최근의 한보철강 부도사태를 보면서 정경유착의 피해가 결국은 국민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가져오게 되고 관련기업과 금융기관의 주주로서, 납품업자로서, 납세자로서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만 그 처리를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의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취지

지난 몇 년간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특혜대출을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근간인 은행들의 경영기반이 흔들리고 국제적인 신용도가 추락하여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은행의 감독과 정기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여 은행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엄청난 부실채권을 가지게 되기까지 방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실대출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해당 은행장 몇 명을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약한 처벌만으로는 '권력층의 부당한 대출압력에 의한 특혜대출'과 그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은행들의 부실화'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관·재계가 연관된 특혜성의 부실대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중립적이고 엄정한 감독권 행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야말로 바로 한국은행감독권의 존립이유이자 법률적·경제적인 사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감독권 행사에 고의적인 면탈이나 사실상의 해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정상적인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커다란 후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보사태를 거울로 삼아 향후에는 반드시 특혜성 혹은 외압에 의한 부실대출을 근절하고 국가경제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일별백계 차원에서 엄중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범죄사실

이번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무능한 재벌총수에 의한 경영전횡, 관치금융, 정치권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외압 등 한국의 금융산업과 경제운용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라면 자본금이 9백억원에 불과한 기업에게 엄격한 대출심사도 없이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련 은행들은 이미 부실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기업에게 추가대출에 필수적인 자금조달계획서도 받지 않고 96년말과 97년초에 5천2백억원의 자금을 추가대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원 등 국가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억제되기는커녕 95년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본다면 이들 국가기관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매년 1회이상 예고없이 그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의 업태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한국은행법 제30조 제1항). 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법률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령·지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은행법 제7조 제1항). 그리고 은행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 임원이 법률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령·지시·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통화운영위원회에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과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것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은행법 제40조 제1항).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한보철강의 부실징후와 금융기관의 과다한 특혜대출사실을 정기검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제·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임원해임권고 건의·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특별검사·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신분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경우 그 맡은 바 직무의 중대함 때문에 한국은행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발인들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3. 결 론

결국 한보철강에 대해 부실·특혜대출을 한 제일은행, 조홍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감독의무수행을 방임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22조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일은행, 조홍은행, 외환은행 등은 엄청난 경영상의 타격을 받았으며, 위 은행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투자자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나아가 한국의 국제적인 신용도도 실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고발인들은 다수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97년 1월 31일

위 고발인 이승희 (인)

권진관 (인)

이동출 (인)

박현용 (인)

황정아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